

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3 - 251
--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4. 5. 19.

제 출 자 : 파주시장

□ 제안이유

- 환경부예규 「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」이 2004. 2. 9일 개정됨에 따라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정함.

(안 별표 4)

(단위 : 만원)

개 정 전			개 정 후		
1차	2차	3차	1차	2차	3차
200	300	300	50	150	300

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중 제4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자 (법 제14조)	50	150	300	-
--	----	-----	-----	---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·소		환경보호과 ☎ 940-8541
입안자	환경보호과장	백 철 현
	재활용 담 당	박 찬 규
	담 당 자	이 명 수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				개 정 안				
과 태 료 (단위 : 만원)					과 태 료 (단위 : 만원)				
부과대상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포상금액	부과대상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포상금액
4. 분리배출표시를 하 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자(법 제14조)	200	300	300	-	4. 분리배출표시를 하 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자(법 제14조)	50	150	300	-

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이 조례안은 2004년 5월 19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5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

1. 제안이유

- 환경부 예규 「과태료부과·징수업무에관한규정」이 2004. 2. 9일 개정됨에 따라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중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정함. (안 별표4)

(단위 : 만원)

개 정 전			개 정 후		
1차	2차	3차	1차	2차	3차
200	300	300	50	150	300

3. 검토의견

-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4. 2. 9일 환경부 예규인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과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중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환경부 예규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수거를 위한 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한 제품 및 포장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제품 포장재의 제조자들은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그 제품 포장재에 분리배출표시를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금번 조정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1차 적발 시 200만원에서 50만원으로, 2차 적발 시에는 3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3차 적발 시는 300만원으로 변동이 없도록 하는 사항임.
- 금번 과태료부과기준의 하향조정은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다는 지방자치단체와 제품 및 포장재 제조자들의 여론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.
- 참고적으로 재활용품의 분리배출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제도는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되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되어 오다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임.

- 현재 우리 시는 재활용품에 대해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자에 대한 적발사례와 과태료 부과실적이 없는 실정임.

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

제 14 조 (분리배출표시)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수거를 위한 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한 제품·포장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·포장재의 제조자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그 제품·포장재에 분리배출표시를 하여야 한다.